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77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이성윤·강준현·이기헌

이재강 • 허종식 • 정동영

김태년 • 추미애 • 양부남

장경태・박선원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,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 에 한정하고 있음.

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-전주, 목포-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,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"2015년"을 "2027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제3조(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8조부터 제5 적용례 등) ① -----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 치단체에 적용한다. 다만, 제53 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----2027년----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